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70835 부당이득금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도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0,35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1. 원고의 주장

합변 전 [redacted]건설 주식회사(이하 '[redacted]건설'이라 한다)는 [redacted]토지주택공사로부터 [redacted]양촌 택지개발지구 1211번지(Ab-09블록) 78,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9. 30. 주식회사 [redacted]자산신탁(이하 '[redacted]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반 권리를 [redacted]신탁에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10. 30. [redacted]건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redacted]시장은 [redacted]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4. 9. 11. [redacted]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redacted]신탁이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보문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redacted]건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데, 코람코신탁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 보문건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redacted]건설은 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redacted]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redacted]건설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redacted]건설이 [redacted]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redacted]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redacted]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redacted]건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redacted]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redacted]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달리 [redacted]건설의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redacted]건설의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redacted]신탁이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부과처분 취소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인데, 조세심판원이 [redacted]시장이 [redacted]신탁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redacted]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가 유효함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재판장 판사 이미선

판사 오지애

판사 박진욱